

강의평가 규정

제정 2018년 03월 0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신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함)의 강의의 질적 향상을 도모를 위한 강의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강의평가는 정규 학기에 개설된 강의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 등의 학점인정교과의 경우에는 수업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강의형태가 팀티칭으로 운영하는 강좌의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전체 시수의 20%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강의평가 유형) ① 강의평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이론 강의
2. 이론 및 실습 병행 강의
3. 실습 전용 강의
4. 팀티칭 강좌

② 전 항의 강의평가 유형에 따라 강의평가 문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평가기준) ① 강의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1. 학생 자가 평가 영역
2. 강의설계 및 수행평가
3. 추천 의향

② 강의평가의 내용은 ‘별표 1’ 과 같다.

제5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강의평가는 매 학기말에 1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의평가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온라인상에서 해당 학기 성적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제6조(주관부서 및 업무) 강의평가제도에 관한 업무는 교학처에서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의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강의평가 결과 취합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강의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강의평가 결과 적용에 관한 사항

제7조(평가결과 활용) ① 강의평가 결과는 교원업적평가, 다음 학기 수업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의평가 결과를 시간강사의 재위촉 등의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공개) ① 학습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습 선택권과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의평가 결과를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② 공개 내용으로는 교과목, 담당교수, 수강정보, 강의평가 결과 등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 학칙 등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강의평가서

강 의 평 가 서

학년도 학기

본 강의 평가서는 수강생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의 교육발전과 수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편견 없이 공정하게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목 명	담 당 교 수 명

◆ 다음 각 문항의 내용을 읽고 각 해당란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매우 그렇다 4 : 그렇다 3 : 보통이다 2 : 아니다 1 : 전혀 아니다.

평 가 문 항	5	4	3	2	1
1. 교수는 강의 전 구체적인 강의 목표와 계획을 설명하였다.					
2. 강의는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잘 진행되었다.					
3. 강의 시간은 잘 지켜졌으며 결강 없이 성실히 진행되었다.(휴강시 보강포함)					
4. 강의 교재와 참고 도서는 강의를 이해하는데 적절하였다.					
5. 강의는 학생들의 지적수준을 고려하여 잘 진행되었다.					
6. 강의 내용은 폭넓고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					
7. 수강생들에게 요구되는 강의준비와 과제물의 양은 적절하였다.					
8. 교수는 강의 준비를 충실히 하였으며, 강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강의하였다.					
9. 교수는 학생의 질문에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였다.					
10. 제시된 평가기준이 평가시 적용되었다.					
11. 교수가 선택한 수업진행 방법 및 보조 자료는 적절하였다.					
12.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유용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13. 나는 본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4. 본 강의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만족한다.					
15. 본 강의를 다른 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					

16. 기타 사항

※ 담당교수에게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환경이나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